

행정자치부

시정요구

제 목 ○○○○ 보안점검 및 조치 업무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

내 용

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추진 등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시정홍보, 주민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·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·운영 등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

정보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,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 창원시에서는 ○○○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○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로 제공하면서 0000년까지 ○○○○ 점검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였으나, 0000년 이후 일부 개편되는 ○○○○ ○○ ○○에 대해 0000년 감사일 현재까지 ○○○○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.

이에 따라, 정부합동기간 중에 ○○○○ ○○○○의 ○○○○ 점검을 위해

○○○ ○○○을 임의로 작성하고 ○○○○의 ○○ ○○에서 ○○○을 입력하고 ○○ ○○을 눌렀을 때 ○○○이 실행이 되지 않거나 ○○ ○○○○에 의해 검색된 결과가 나타나야 되나 ○○○이 ○○○ 결과 값이 ○○에 표시되었다.

따라서, 위 기관에서는 ○ ○○○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하여 ○○○이 ○ ○되었고, ○○○을 이용하여 ○○가 ○○○○ ○○○○를 ○○하여 사용자 ○ ○○○, ○○○○ ○○ 등을 통하여 ○○정보가 외부로 ○○되거나, ○·○○ 수 있도록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

발견된 ○○○○의 ○○○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향후 ○○○ 이 발견되지 않도록 정기점검 계획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